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화아세안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아세안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화아세안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년 10월 25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11월 6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증권의 총좌수 및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화자산운용㈜ 본점, 각 판매회사 및 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에 투자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예상과 다른 부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대부분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화자산에 투자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 **이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9.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0. 후취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실수령금액이 환매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은 해당 투자자의 과세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나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이익이 없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인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환헷지 대상 해외자산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헤지 거래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모집합투자기구 및/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분산투자가 어렵거나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협의하여 펀드의 임의해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고려하시어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를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의 자산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기재가 곤란하여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4. 2016 년 8 월 8 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해외재간접 구조-피투자펀드 및 해외운용사 현황 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정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요약정보〉 기준일: 2026.10.25

한화아세안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 75073]

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신흥시장위험, 시장위험 및 투자신탁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화아세안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모투자신탁인 한화아세안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룩셈부르그에 등록된 제이피모간펀드(JPMorgan Funds)에 속한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아세안 펀드(JPMF-ASEAN Fund)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아세안 펀드(JPMF-ASEAN Fund)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펀드명	JPMF-아세안주식 펀드(JPMF-ASEAN Equity Fund)
기준통화	미달러화(USD)
벤치마크	MSCI AC ASEAN 10/40 Index (Total Return Net)
투자목적	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주) 회원국들의 회사들에 투자를 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은 투자설명서 일자 현재 아세안 소속 국가들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및 베트남입니다. 아세안의 구성원 국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전략	주) 이 항목에 기재된 사항은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기재사항은 본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자산(현금 및 현금 등가물 제외)의 최소 67% 이상을 아세안 회원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아세안 회원국 지역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지분증권에 투자합니다. - 아세안 회원국 중 일부는 신흥시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하위집합투자기구는 다른 나라(특히 중국)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아세안 회원국에 상장된 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채무증권, 현금 및 현금등가물도 부수적으로 보유될 수 있습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UCITS 및 다른 UCI들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모든 통화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통화위험은 헷지됩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헷지 목적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을 위하여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특성	- 투자자산의 가치는 등락할 수 있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공격적으로 운용되고, 큰 규모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단기간에 큰 규모로 투자대상자산을 교체함으로써 시장의 특정 영역에 상당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분 증권의 가치는 개별 회사의 성과 및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할 수 있습니다. - 신흥시장은 정치적, 규제적,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대, 발달되지 못한 보관 및 결제절차, 낮은 투명성 그리고 높은 재무적 위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통화는 불안정한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증권은 선진시장의 증권보다 변동성이 높고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산업 분야 또는 국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된 펀드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높은 소규모 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규모회사의 주식보다 더 큰 재무적 위험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환율의 변동은 투자자들의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통화헷징은 항상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 MSCI AC ASEAN TRN Index(USD) 90% + MMI Call10%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2% 이내	1.91	1.00	0.90	2.0804	331	552	784	1,284	2,7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없음	2.41	1.50	1.19	2.4100	247	496	745	1,268	2,845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1.41	0.50	0.58	1.5857	212	382	560	944	2,08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91	1.00	0.73	2.0789	213	437	672	1,177	2,68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3년 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1.26	0.35		1.2600	129	265	407	714	1,624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 · 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합성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1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5/10/26~2026/10/25	2024/10/26~2026/10/25	2023/10/26~2026/10/25	2021/10/26~2026/10/2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07.10.19	1.48	2.55	7.95	0.72	0.81

비교지수(%)		5.94	7.04	12.50	4.27	3.29
수익률변동성(%)		10.50	11.69	11.34	12.16	17.88

* 비교지수: MSCI AC ASEAN TRN Index(USD) 90% + MMI Call10%(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 (단위: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강다연	2002	책임(매니저)	37	3,226	-	-	4.72	7.97	4개월
손경아	1987	부책임(매니저)	18	3,619	2.46	6.55			3년

*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아니하며 투자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신흥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재산을 투자하는 몇몇 신흥 시장의 회계, 감사, 재무 보고 관련 기준은 국제 기준에 비하여 덜 엄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몇몇 기업들은 특정한 주요 공지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흥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와 위험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상당수의 신흥 시장 국가들은 근대적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거나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와 관련하여 매우 높은 수위의 직접적인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갑작스럽고 광범위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경제와 투자신탁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흥시장의 국유화 · 몰수 · 세금징수 · 외국환 규제 · 정치적 변화, 정부 규제 · 사회적 불안정 · 외교 상황과 제한적 유동성, 가격 변동성, 외국인 투자 및 자본에 대한 규제와 같은 작은 자본 시장 투자의 위험, 그리고 높은 물가 인상과 금리, 정치 · 사회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신흥 경제와 관련된 위험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흥시장과 관련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포트폴리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현함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투자신탁위험	모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기준가격은 원화로 표시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하위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외화표시자산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헤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표 환헤지비율은 환헤지 가능 순자산의 70%이상이며 최대100%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의 환경에 따라 유동성 부족, 거래상대방 부족,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변동, 외환관련 파생시장에 환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헤지거래가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헤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 · 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준가격 산출에 있어 외국주식과 환헤지 목적으로 투자한 파생상품의 평가반영 시점이 상이한 경우 헤지효과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자산 표시통화 대비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경우(환율상승)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이러한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통화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 및 투자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지만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7영업일(D+6)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table>
<tr><td></td><td>
<table>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able>
</td></tr>
<tr><td>과세</td><td>
<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 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able>
· 종류 CP, CP-E, S-P 수익증권 수익자(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 P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수익자에 대한 과세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합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는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을 통하여 해외상장주식(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해외상장주식을 말하며, 이하 “해외상장주식”이라 함)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투자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이 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해외상장주식을 말하며, 이하 “해외상장주식”이라 함)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은 해당 투자자의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이익이 없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인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환헷지 대상 해외자산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헤지 거래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계좌와 관련된 과세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정부 정책의 변경 및 개별 가입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고,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종류 수익증권간 전환)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이하 “최초매수일”이라 합니다.)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처리를 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종류 C1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종류 C4 수익증권을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한화자산운용㈜ (대표번호 : 02-6950-00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anwhafund.co.kr)</td></tr>
</table>

<table>
<tr><td>모집기간</td><td>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제한없음</td></tr>
<tr><td>효력 발생일</td><td>2026년 11월 6일</td><td>존속 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3">판매 수수료</td><td>수수료 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I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 후취</td><td>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 rowspan="3">판매 경로</td><td>온라인 (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 슈퍼(S)</td><td>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 rowspan="6">기타</td><td>보수체감</td><td>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 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td></tr>
<tr><td>개인100억, 법인50억 (I)</td><td>최초 납입금액 100 억 이상 개인 또는 50 억 이상 100 억 미만 일반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랩 (W)</td><td>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기관, 법인100억 (F)</td><td>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또는 최초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일반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개인연금 (P)</td><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퇴직연금 (P)</td><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
</td></tr>
</table>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kr)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한화아세안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75073)

투자신탁의 종류(클래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75074
수수료선취-온라인(A-E)	AY10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Y1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750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295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295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295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295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법인100억(C-F)	931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100억, 법인50억(C-I)	AE4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9310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755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B46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B465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46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B465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으로 분류됩니다.

나. 운용자산별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재간접형)**로 분류됩니다.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중도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으로 분류됩니다.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으로 분류됩니다.

마. 특수형태 표시: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클래스)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모자형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됩니다.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

주) 상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과“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제1부의 내용 중 4.가. “모집의 내용”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주) 모집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이 취소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의 내용: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하고자 하는 투자신탁의 종류(클래스) 및 종류별(클래스별) 가입자격은 제 2 부의 내용 중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종류별로 모집규모가 정해지지 아니하고 모집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모집의 규모 및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나. 모집방법 및 내용: 이 투자신탁의 모집(매출)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내용 중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기간: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라. 모집장소: 이 투자신탁은 판매회사 본·지점을 통해 모집합니다.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www.hanwhafund.c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인수인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인수의 방법으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상장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한화아세안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75073)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신탁의 종류(클래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75074
수수료선취-온라인(A-E)	AY10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Y1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750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295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295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295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295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법인100억(C-F)	931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100억, 법인50억(C-I)	AE4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9310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755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B46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B465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46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B465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경사항
2007.10.1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2008.09.16	영업일 정의 등 변경
2008.10.18	투자신탁 결산
2009.05.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명칭 등 변경
2009.10.18	투자신탁 결산
2010.03.16	매입기준일의 변경
2010.05.03	C클래스 판매보수 인하
2010.10.18	투자신탁 결산
2011.01.17	C클래스를 C1클래스로 명칭 변경 C2클래스, C3클래스, C4클래스, C5클래스 신설 C-E클래스 판매보수 인하
2011.10.18	투자신탁 결산
2012.10.18	투자신탁 결산
2012.11.29	C-I 클래스 신설
2013.10.18	투자신탁 결산
2014.10.18	투자신탁 결산
2014.11.28	A-E 및 S 클래스 신설
2015.07.03	CP, CP-E, S-P 및 P 클래스 신설
2015.10.18	투자신탁 결산

2015.12.17	환매수수료 삭제
2016.07.02	투자위험등급 체계 개편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2016.08.08	세법개정에 따른 정정 (이익분배금 유보 등)
2016.10.18	투자신탁 결산
2017.01.19	펀드 종류 변경(재간접형)에 따른 투자제한, 투자전략 및 투자신탁 명칭 변경
2017.10.18	투자신탁 결산
2018.06.04	- 집합투자업자 변경(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 투자신탁 명칭 변경,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일반사무관리보수 인하
2018.08.31	비교지수 변경: MSCI AC ASEAN TRN Index(USD) 95% + MMI Call 5% → MSCI AC ASEAN TRN Index(USD) 90% + MMI Call 10%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양우석 → 신동혁
2019.04.16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신동혁 → 김종경
2019.09.2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019.08.01) 반영
2020.01.10	전자증권제도 시행 반영
2020.02.14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종경 → 손경아)
2020.11.05	투자위험등급 변경: 3등급(다소 높은 위험) → 2등급(높은 위험)
2021.10.1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모투자신탁 포함) (손경아 → 조은지)
2021.12.14	하위집합투자기구 비교지수 변경 (변경전: MSCI AC ASEAN Index (TRN) → 변경후: MSCI AC ASEAN 10/40 Index (Total Return Net))
2022.05.27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조은지 → 김종육) - 모투자신탁(한화아세안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조은지 → 김종육)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1.10.21 개정)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2022.08.12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종육 → 김청미) - 모투자신탁(한화아세안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종육 → 김청미) - 펀드의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금융비용 관련 항목 및 문구 업데이트
2022.11.10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수익률 변동성 변경(15.71% → 20.06%)
2022.11.23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청미 → 김동한) - 모투자신탁[한화아세안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청미 → 김동한)
2023.04.12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동한 → 변재일)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설(성낙찬) - 모투자신탁[한화아세안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동한 → 변재일)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설(성낙찬) -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변경(신한아이타스 → 신한펀드파트너스)
2023.11.03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펀드 위험등급 변경(2등급 → 3등급) - 수익률 변동성 변경(20.06% → 13.40%)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3.02.20) - 연금세제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24.08.30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신한펀드파트너스→하나펀드서비스) (2024.09.02 시행)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표기)
2024.11. 05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금융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2024.8.1 시행 / 종류 S, S-P 수익증권 정의 변경) -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4.03.01)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기준)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 21.49% - 연금세제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 채권평가회사 관련 변경사항 반영 -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변경 반영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2024.10.21)
2025.04. 10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성낙찬 → 양여울) - 모투자신탁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성낙찬 → 양여울)
2025. 11. 07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변경 (21.49% → 21.88%)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정)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2025.10.28)
2026. 03. 24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변재일 → 최혜린)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양여울 → 손경아) -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변재일 → 최혜린) - 모투자신탁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양여울 → 손경아)
2026.07.02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최혜린 → 강다연) -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최혜린 → 강다연)
2026.11.06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2026.10.18)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변경 (21.88% → 22.48%)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2026.10.25)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상기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대표전화: 02-6950-00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업무위탁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기준일: 2026.10.25)

구분	성명	생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 (해외-재간접형, 단위: %)				주요경력 및 이력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매니저)	강다연	2002	37	3,226	-	-	4.72	7.97	- 운용경력년수: 4개월 - 중앙대 응용통계학 - 한화자산운용(2026.06~현재)
부책임 (매니저)	손경아	1987	18	3,619	2.46	6.55			- 운용경력년수: 3년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 SC은행 (20120.05~2013.12) - 하나은행 (2014.01~2015.12) - 한화자산운용 (2016.02~현재)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없음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26.03.24	변재일	최혜린
2026.07.02	최혜린	강다연

다. 최근 3년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24.03.31	성낙찬	양여울
2026.03.24	양여울	손경아

[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운용전문인력 현황]

- 한화아세안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기준일: 2026.10.25)

구분	성명	생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 (해외-재간접형, 단위: %)		주요경력 및 이력
			집합투자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기구수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매니저)	강다연	2002	37	3,226	-	-	4.72	7.97	- 운용경력년수: 4개월 - 중앙대 응용통계학 - 한화자산운용(2026.06~현재)
부책임 (매니저)	손경아	1987	18	3,619	2.46	6.55			- 운용경력년수: 3년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 SC은행 (20120.05~2013.12) - 하나은행 (2014.01~2015.12) - 한화자산운용 (2016.02~현재)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

		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 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개인100억, 법인50억 (I)	최초 납입금액 100 억 이상 개인 또는 50 억 이상 100 억 미만 일반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법인100억 (F)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또는 최초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일반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 모자형

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한화아세안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한화아세안증권 자투자신탁(주식)	60% 이상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60%이상	한화아세안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②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파생상품시장 또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으로서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단,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 재산의 위험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③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④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⑤ 금전의 차입	차입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금전의 차입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①부터 ③까지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①부터 ③까지의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한화아세안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50%이상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중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주식형 집합투자증권”)
② 기타 집합투자증권	50%이하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중 주식을 제외한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기타 집합투자증권”)
③ 국내주식	50%이하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국내에서 전자등록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것 (“국내주식”)
④ 해외주식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국내주식”과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 (“해외주식”)
⑤ 파생결합증권	50% 이하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증권”)
⑥ 국내채권	50%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국내채권”)
⑦ 해외채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국내채권”과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해외채권”)
⑧ 자산유동화증권	5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

		는 증서로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자산유동화증권”)
⑨ 어음 등	50%이하	양도성 예금증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어음 등”)
⑩ 해외어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어음 등”과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해외어음”)
⑪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파생상품”)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장내파생상품”)
⑫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장외파생상품”)
⑬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⑭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⑮ 증권의 차입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상기 ①부터 ⑦까지 및 ⑨부터 ⑩까지에 따른 증권의 차입은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⑯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⑰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⑱금전의 차입	차입당시 모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금전의 차입
모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①부터 ⑫까지 및 ⑰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이 재간접형으로 변경등록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①의 투자한도는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으로 변경 적용되며, ④의 투자한도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모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①부터 ⑮까지 및 ⑰의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합니다.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신탁업자에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① 단기대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 즉,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에 대한 단기대출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함) 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② 파생상품 매매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이 정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③ 파생상품 매매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파생상품 매매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 매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③부터 ⑤까지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③부터 ⑤까지의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인 한화아세안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신탁업자에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① 집합투자증권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함. 이하 ①부터 ⑥까지에서 같음)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 이하 ①부터 ⑥까지에서 같음)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음.
② 집합투자증권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각 투자할 수 있음.
③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④ 집합투자증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⑤ 집합투자증권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 집합투자증권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모투자신탁의 투자재산으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⑦ 단기대출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 즉,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에 대한 단기대출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함)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⑧ 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을 포함. 이하 본 투자제한 부분에서 같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본 투자제한 부분에서 같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 이하: 국채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 이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에 한함),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됨)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합니다.
⑨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⑩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⑪ 파생상품매매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이 정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⑫ 파생상품매매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⑬ 파생상품매매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⑭ 파생상품매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⑮ 집합투자업자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와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가능.

⑯ 후순위 채권	모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모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①, ②, ⑧, ⑫부터 ⑭까지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모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①부터 ⑥까지, ⑧부터 ⑩까지, ⑫부터 ⑭까지의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모투자신탁인 한화아세안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투자합니다.

(2)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한화아세안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룩셈부르그에 등록된 제이피모간펀드(JPMorgan Funds)에 속한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아세안 주식 펀드(JPMF-ASEAN Equity Fund X(acc), 이하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아세안 주식 펀드(JPMF-ASEAN Equity Fund X(acc))는 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들의 회사들에 투자를 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JPMF-아세안 주식 펀드(JPMF-ASEAN Equity Fund X(acc))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펀드명	JPMF-아세안주식 펀드(JPMF-ASEAN Equity Fund)
기준통화	미달러화(USD)
벤치마크	MSCI AC ASEAN 10/40 Index (Total Return Net)
투자목적	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주) 회원국들의 회사들에 투자를 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은 투자설명서 일자 현재 아세안 소속 국가들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및 베트남입니다. 아세안의 구성원 국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전략	※주) 이 항목에 기재된 사항은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기재사항은 본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자산(현금 및 현금 등가물 제외)의 최소 67% 이상을 아세안 회원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아세안 회원국 지역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지분증권에 투자합니다. 아세안 회원국 중 일부는 신흥시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집합투자기구는 다른 나라(특히 중국)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아세안 회원국에 상장된 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채무증권, 현금 및 현금등가물도 부수적으로 보유될 수 있습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UCITS 및 다른 UCI들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모든 통화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통화위험은 헷지됩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헷지 목적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을 위하여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특성	투자자산의 가치는 등락할 수 있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공격적으로 운용되고, 큰 규모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단기간에 큰 규모로 투자대상자산을 교체함으로써 시장의 특정 영역에 상당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분 증권의 가치는 개별 회사의 성과 및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할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은 정치적, 규제적,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대, 발달되지 못한 보관 및 결제절차, 낮은 투명성 그리고 높은 재무적 위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통화는 불안정한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증권은 선진시장의 증권보다 변동성이 높고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산업 분야 또는 국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된 펀드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높은 소규모 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규모회사의 주식보다 더 큰 재무적 위험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은 투자자들의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통화헷징은 항상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	벤치마크는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벤치마크와 유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펀드등록일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법에 따라 2013년 1월 15일에 등록되었습니다.
펀드매니저	Pauline Ng Pauline Ng 는 Pacific Regional Group 소속으로 투자매니저이자 아세안 국가 전문가입니다.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2005 년 당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AllianzDresdner Asset Management 에서 4 년간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Asia ex Japan telecommunications 의 애널리스트로서 그 후에는 말레이시아와 이머징 아시아의 책임 운용역으로 일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에서 회계학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공인회계사 및 CFA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용회사	JPMorgan Asse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다만,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JPMF-아세안 주식 펀드(JPMF-ASEAN Equity Fund)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수익자에게의 통보 등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 및 환위험 관리

1)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일반적으로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는 하나 이상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외화표시자산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환헤지란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2) 환헤지 방법 및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하여 하위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의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통화선물,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환위험을 헤지할 계획입니다. 환헤지 비율은 환헤지 가능한 순자산의 70% 이상(최대 100% 수준)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의 환경에 따라 유동성 부족, 거래상대방 부족,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변동, 외환관련 파생시장에 환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환헤지의 장단점

환헤지를 통해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자산 표시통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환차익을 취하지 못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환헤지비용 등

헤지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4)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사정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MSCI AC ASEAN TRN Index(USD) 90% + MMI Call10%

주1)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헷지 계약의 만기 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헷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MSCI Inc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동남아시아지역의 주식시장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이며 TRN은 세후배당이익 등을 재투자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주3) 이 투자신탁은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국가와 한국간의 영업일, 시차 등으로 인하여 비교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직접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므로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평가액 산출기간에 따라서 추가적인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본 문서의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 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등록(또는 정정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되며,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서 발생한 손익은 이 투자신탁을 통하여 종류(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하여 본 문서의 작성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 및 이 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기타 투자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투자의사 결정시 참고하여야 할 모든 위험이나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니며, 향후 투자환경의 변화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임을 투자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대하여 제2부 "9. 가. (2)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중 위험특성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투자신탁위험	모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기준가격은 원화로 표시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하위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외화표시 자산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헤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표 환헤지비율은 환헤지 가능 순자산의 70%이상이며 최대100%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의 환경에 따라 유동성 부족, 거래상대방 부족,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변동, 외환관련 파생시장에 환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헤지거래가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헤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준가격 산출에 있어 외국주식과 환헤지 목적으로 투자한 파생상품의 평가반영 시점이 상이한 경우 헤지효과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자산 표시통화 대비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경우(환율상승)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이러한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통화위험	모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자산 및 투자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지만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무증권의 가격은 현행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장상황에 미루어 볼 때,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위험은 높았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외(신흥시장 포함)의 자산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와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신흥시장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재산을 투자하는 몇몇 신흥 시장의 회계, 감사, 재무 보고 관련 기준은 국제 기준에 비하여 덜 엄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몇몇 기업들은 특정한 주요 공지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흥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와 위험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상당수의 신흥 시장 국가들은 근대적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거나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와 관련하여 매우 높은 수위의 직접적인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갑작스럽고 광범위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경제와 투자신탁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흥시장의 국유화 · 몰수 · 세금징수 · 외국환 규제 · 정치적 변화, 정부 규제 · 사회적 불안정 · 외교 상황과 제한적 유동성, 가격 변동성, 외국인 투자 및 자본에 대한 규제와 같은 작은 자본 시장 투자의 위험, 그리고 높은 물가 인상과 금리, 정치 · 사회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신흥 경제와 관련된 위험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흥시장과 관련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포트폴리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현함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산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집합투자기구는 고도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보유종목의 측면에서 다양화되어 있더라도, 수익자들은 하위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국가의 상황악화로 인한 가격변동에 더 많이 노출되어, 광범위한 투자신탁, 예컨대, 글로벌주식형 투자신탁보다 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의 변동이 심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동성위험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는 경제, 정치, 시장 및 발행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산업, 금융시장 및 증권은 이러한 변화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모투자신탁의 가치는 변동성을 가질 수 있고, 단기간 동안에는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위 집합투자기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은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투자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의 매입 또는 환매 청구가 청구 받은 당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

위험	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로 청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기존 수익자 또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추가적인 매입 또는 전환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하위 집합투자기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세금 및 규정등 제도적 위험	하위 집합투자기구 및/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운용되는 기간 중 법률, 세금 및 규정 등의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운용중인 하위 집합투자기구 및/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규정이 제정되는 경우 하위 집합투자기구, 이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및 수익자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 이하 같음)은 해당투자자의 과세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나,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등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이익이 없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인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환헷지 대상 해외자산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헤지 거래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14. 나. (6)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수익자에 대한 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모투자신탁 및/또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신고 제도(FATCA)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US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HIRE”)에 포함되어 제정된 FATCA에 의하면, 모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FATCA를 따르지 않는 경우 2014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특정한 미국 원천소득(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서 주로 미국정부를 포함한 미국 법인·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 및 이자)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미국 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매각수익 총액(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서 주로 미국정부를 포함한 미국 법인·기관이 발행한 지분·채무증권)에 대하여 30%의 세율로 미국 원천징수가 부과됩니다. 미국 재무규정(US Treasury Regulations) 하에서는 FATCA는 미 국세청(IRS)과 외국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FFI)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적용되고, 이에 따라 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투자신탁의 특정 투자자(FATCA에 따라 제정된 미국 재무규정상의 특정 미국인 또는 특정 미국인이 소유하는 비미국 법인 등을 의미합니다.)의 지분율 및 그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관련된 미국 세금보고에 동의하게 됩니다. 모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은 대한민국에 위치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Model 1 정부간 협약(이하 “한국 IGA”)의 적용을 받는데, 이에 따르면 모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은 대한민국 현지의 지도에 따라 시행되는 FATCA를 준수할 것이 요구되고, FATCA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에 보고할 것이 요구됩니다. 한국 IGA는 미국 재무규정상 FATCA 요구사항을 수정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미 국세청에 전달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유사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은 FATCA를 준수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2017년까지는 모투자신탁의 경우 미국 원천 수입에 대한 30%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투자신탁 또한 투자자

	들에게 이루어지는 지급에 관하여 FATCA 원천징수를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은 현재 FATCA를 준수하고자 하나, FATCA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FATCA의 준수가 보장되지는 아니합니다. 만일 모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FATCA에 따른 원천징수의 부담을 면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투자신탁에 지급되는 미국원천 지급금에 대하여 FATCA에 따른 3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즉,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FATCA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은 미 국세청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의도되거나 작성되지 않았으며, 누구도 미국연방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추징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 내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자신의 FATCA 지위와 FATCA 도입의 효과와 관련하여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위험	금융시장은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위 집합투자기구와의 성과차이 위험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이 투자신탁 및/또는 모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유동성 관리 목적을 위해 유동성 자산에 투자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특히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이나 만기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되고 높은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UCITS 및 UCI에 대한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그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UCITS 및 UCI (이하 “피투자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경우, 본 위험은 피투자펀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수행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피투자펀드의 투자결정은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피투자펀드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과 동일한 증권, 동일한 자산 클래스, 산업, 통화, 국가 또는 상품에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집합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고자 하는 노력이 언제나 달성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피투자펀드의 경우 일정한 수수료 및 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에 반영될 것입니다. 다만,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관리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기타 JPMorgan Chase & Co. 소속 회사가 운용하는 피투자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선취보수, 전환/환매 수수료, 연간 운용/자문보수 또는 운영/관리 비용은 중복적으로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집합투자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선물, 스왑 및 비상장 옵션 등과 같은 장외거래 상품을 다량 보유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품들은 때때로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외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즉시 현금화하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투자신탁은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자산 전체의 현금화가 요구되는 경우, 월단위로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같은 특정 자산은 즉시 현금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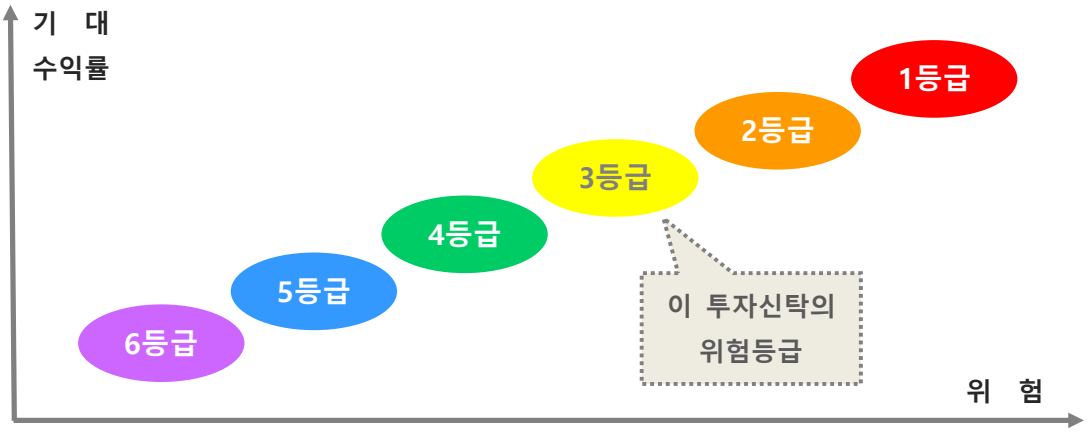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투자자의 환매요구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매입/환매청구일과 매입/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매입/환매청구일로부터 매입/환매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펀드규모 위험	집합투자기구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모투자신탁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원활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 투자대상국가의 휴일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국가의 휴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혹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 위험 및 외환거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문서 제2부의 내용 중 “11. 나.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 위험	모투자신탁 및/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모투자신탁 및/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모투자신탁 및/또는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또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 22.48%]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다소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다소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다소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추후 이 투자신탁의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험등급 기준은 한화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자가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기준〉

상기의 위험등급은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급	신규 및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상기 분류기준 이외에 투자전략,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레버리지 수준, 환위험(환헷지 50% 미만 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사용)

구분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4등급 (보통 위험)	5등급 (낮은 위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97.5% VaR (일간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OO%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OO%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이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 직접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구하거나, 판매회사가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www.hanwhafund.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종류 및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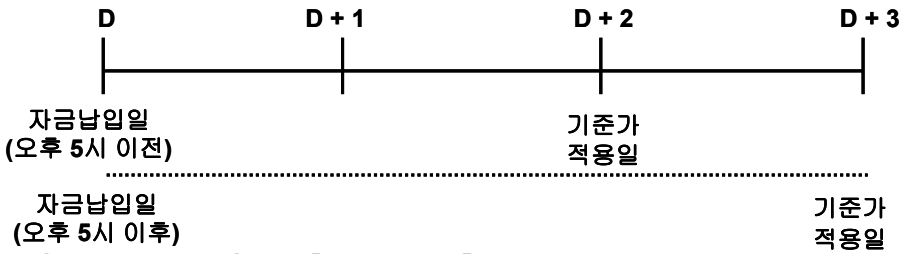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종류 및 종류별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정책에 따라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종류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며,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제 2 부. 11. 다. 수익증권의 전환에 따라 C2 클래스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제 2 부. 11. 다. 수익증권의 전환에 따라 C3 클래스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제 2 부. 11. 다. 수익증권의 전환에 따라 C4 클래스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제 2 부. 11. 다. 수익증권의 전환에 따라 C5 클래스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법인100억(C-F)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부터 제 18 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최초 납입금액 100 억원 이상 일반법인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100억, 법인50억(C-I)	최초 납입금액 100 억이상 개인 또는 50 억이상 100 억미만 일반법인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으며,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개인연금(CP-E)	가입자 중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투자자가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판매회사에 납입한 경우: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납입일로부터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투자자가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판매회사에 납입한 경우: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납입일로부터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해 외화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산정일의 평가시점(한국 시간으로 17 시 30 분 (오후 5 시 30 분) 단 변동 가능함) (이하 "평가시점")에 있어서의 최종시가(또는 "제 2 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일의 공정가액)를 사용해 해당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 및/또는 모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판매회사로부터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판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은 미국 증권법(추후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이하, "법") 및 이와 유사한 미국 내의 어떠한 법에 의하여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법,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ies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특정스왑 규제준수에 관한 지침(Interpretive Guidance and Policy Statement Regarding Compliance with Certain Swap Regulations, 추후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 미국 내국세입법(US 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또는 미국 연방세법(US federal income tax law)에 따라 정의된 자(아래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특정한 미국인이 소유하는 비미국(non-US) 법인(아래 5호의 자를 의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1.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은 (i)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183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을, 전전 연도 체류일수는 1/6을 인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
2.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되는 법인,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쉽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쉽은 제외합니다.
3.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4.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탁으로 취급되었던 선택신탁을 의미합니다.
5. 미국인(위 제1호에서 기재된 자를 의미합니다)인 지배자(Controlling Persons, IRC Section 1471 내지 1474에 따른 미국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와 관련하여 미국정부와 기타 국가의 정부간 체결되는 국가간 협정(Intergovernmerntal Agreement, 이하 "IGA")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가 1인 이상 존재하는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Passive Non-Financial Foreign Entity)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이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나 적극적 비금융외국법인(IGA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이 아닌 비미국(non-US) 비금융법인을 의미합니다.

단, 연금클래스(CP 클래스, CP-E 클래스, S-P 클래스, P 클래스)의 투자자는 미국인 투자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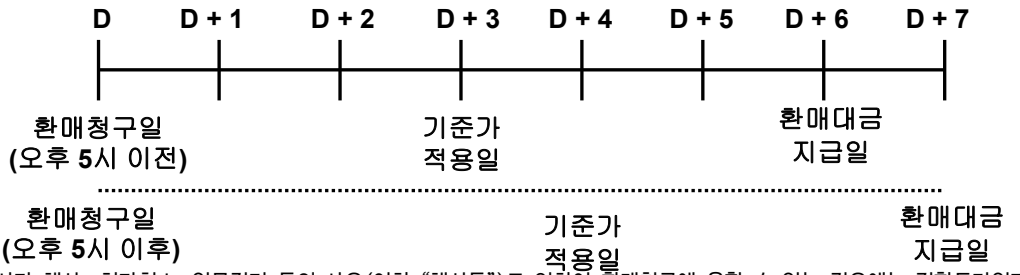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거나, 판매회사가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O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주] :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7영업일(D+6)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주] :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영업일(D+7)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주)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기준일의 5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6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과 신탁계약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주]로 인하여 환매금액의 지급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 이후, 환매연기 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날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기간 동안에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환매연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환매연기 등으로 인한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으로부터 분리하고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C1 클래스 수익증권, C2 클래스 수익증권, C3 클래스 수익증권 및 C4 클래스 수익증권의 잔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익증권의 전환(붙임의 '용어풀이'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익증권의 전환을 말하며, 이하 "제 2 부. 11. 다. 수익증권의 전환"내에서 같음)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전환을 청구합니다. 이 때,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수익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C1클래스 수익증권

↓

C1클래스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당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C1클래스 수익증권을 (C1클래스 수익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입 또는 전환된 시기를 불문하고) C2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C2클래스 수익증권

↓

C1클래스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당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C2클래스 수익증권을 (C2클래스 수익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입 또는 전환된 시기를 불문하고) C3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C3클래스 수익증권

↓

C1클래스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당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C3클래스 수익증권을 (C3클래스 수익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입 또는 전환된 시기를 불문하고) C4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C4클래스 수익증권

↓

C1클래스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에 당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C4클래스 수익증권을 (C4클래스 수익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입 또는 전환된 시기를 불문하고) C5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C5클래스 수익증권

(2) 수익증권의 전환 처리 방법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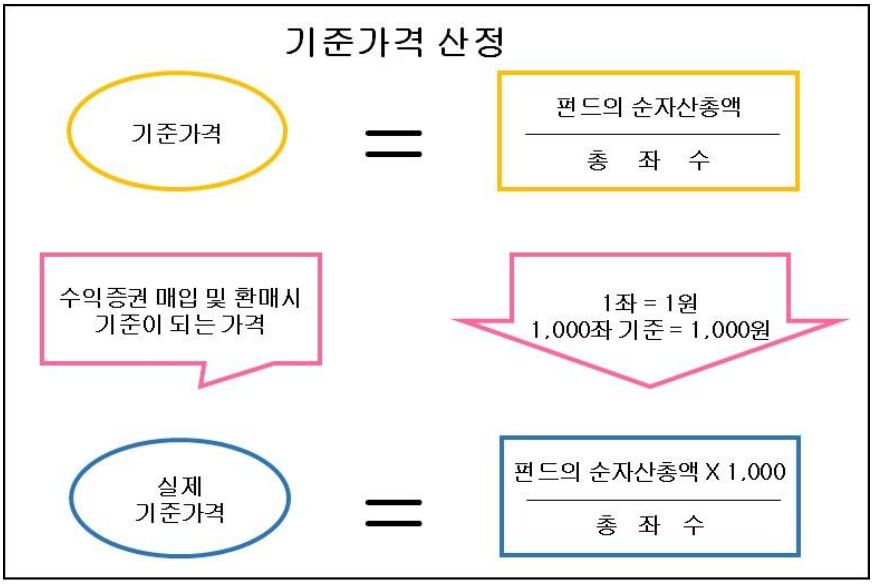
- "제 2 부.11.다.(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에 따라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며(만약 "제 2 부.11.다.(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에 언급된 1 년, 2 년, 3 년, 4 년이 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전환일로 봅니다),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날의 17 시까지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 수익증권의 전환요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제 2 부.11.다.(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를 적용함에 있어 그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방법	전자공시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판매회사 홈페이지, 판매회사 각 영업점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각 종류 수익증권별로 판매보수가 상이하므로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기준가격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되며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주)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파생상품시장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③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한 가격
④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국내주식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은 다음에 따름 1. 종가괴리율[주1)]이 ±2% 범위 이내일 경우: 한국거래소 최종시가 2. 종가괴리율이 ±2% 범위 초과일 경우: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
⑥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시가
⑦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 (비상장주식, 비상장채무증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 1. 취득가격 2. 거래가격 3.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 투자매매업자 등이 제공한 가격
⑧장외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 -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시초매매가 상품의 만기시까지 유지되는 상품: 발행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곳이 제공하는 평균 가격 중 낮은 가격 -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상품의 만기전에 비정기적으로 매매가 예상되는 상품: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단순산술평균
⑨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환율정보를 이용한 환율

주1) 종가괴리율: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한국거래소 최종시가/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1] × 100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1) 구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팀장 등

2) 업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 기타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이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수익증권의 종류(클래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판매보수와 관련해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클래스)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20% 이내[주1)]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0% 이내[주1)]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주2)]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법인100억(C-F)	-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100억, 법인50억(C-I)	-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	-	해당사항 없음
지급시기	매수시	환매시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위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주2) 후취판매수수료는 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위 범위내에서 후취판

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에서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으며 이익분배에 따른 재투자 좌수의 환매분에 대하여는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주1)주2)]

구분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합성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85	1.00	0.04	0.020	1.9100	0.0000	1.9100	0.90	2.0804	0.0000
수수료선취-온라인(A-E)	0.85	0.50	0.04	0.020	1.4100	0.0000	1.4100	0.58	1.5857	0.000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85	0.35	0.04	0.020	1.2600		1.2600		1.26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0.85	1.50	0.04	0.020	2.4100		2.4100	1.19	2.41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0.85	1.40	0.04	0.020	2.3100		2.3100		2.31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0.85	1.30	0.04	0.020	2.2100		2.2100		2.21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0.85	1.20	0.04	0.020	2.1100		2.1100		2.11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0.85	1.10	0.04	0.020	2.0100	0.0000	2.0100		2.1827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법인100억(C-F)	0.85	0.04	0.04	0.020	0.9500		0.9500		0.95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100억,법인50억(C-I)	0.85	0.30	0.04	0.020	1.2100		1.2100		1.21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85	-	0.04	0.020	0.9100		0.9100		0.91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85	1.00	0.04	0.020	1.9100	0.0000	1.9100	0.73	2.0789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85	0.80	0.04	0.020	1.7100	0.0000	1.7100		1.8830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85	0.40	0.04	0.020	1.3100	0.0000	1.3100		1.4837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85	0.20	0.04	0.020	1.1100	0.0000	1.1100		1.2953	0.0000

구분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비용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0.85	0.75	0.04	0.020	1.6600		1.6600		1.6600	
지급시기	매3개월후지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회계감사비용,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기타비용	523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상기 집합투자업자보수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JPMorgan Asset Management(Singapore) Limited**에게 지급되는 운용보수(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되는 운용보수는 연간 0.55%)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투자신탁에서 지급되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지급합니다

주6)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7)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는 이 투자신탁에 청구되지 않으므로, 이 투자신탁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8)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관련 비용의 종류 및 내역

① 기타비용 종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 수수료),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② 증권거래비용 종류: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금융비용 종류: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금융비용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331	552	784	1,284	2,770
수수료선취-온라인(A-E)	212	382	560	944	2,084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129	265	407	714	1,6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C5)	247	496	745	1,268	2,84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법인 100억(C-F)	97	200	307	538	1,2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100억, 법인50억(C-I)	124	254	391	685	1,5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93	191	294	515	1,17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13	437	672	1,177	2,6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193	396	608	1,066	2,42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152	312	479	840	1,91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133	272	419	734	1,6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170	349	536	940	2,140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단,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의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 이후 환매시에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및 보수를 기초로 하여 누계액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보수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으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기의 표는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될 수수료, 보수 및 비용에 관한 확정적 자료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이익금에서 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금전으로 분배하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달리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의 마지막 영업일(당일 포함)로부터 8영업일 전에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이익금 분배를 유보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신탁계약에 따라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익분배금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날)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을 판매회사에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른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 투자신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REITs를 포함함)를 처분함으로써 얻게 되는 배당금 및 집합투자증권의 처분 이익의 범위 내에서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수익증권의 매입, 보유, 양도, 환매 및 기타 분배 등(이하 “관련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거주지 혹은 설립지 법률에 의한 세금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신탁 또는 본 문서의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어떠한 당사자도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과세결과에 대하여 보증 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과세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과 관련 당사자들은 관련 사건에 따른 과세결과나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야기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다음 설명은 본 문서 작성일 당시의 세금관련 한국법과 세무관행에 근거한 것이며 그 내용 및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은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이 한국 거주자인 개인임을 전제로 한 전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의 과세결과를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의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2)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소득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이 분배하는 이익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 및 수익증권의 환매 등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 및 평가 이익은 거주자 개인의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5) 종류 CP, CP-E, S-P 수익증권 수익자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납입요건</td><td>가입기간 5년 이상, ① 및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①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td></tr>
<tr><td>연금 수령요건</td><td>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td></tr>
<tr><td>세액공제</td><td>
<table>
<tr><th>종합소득과세표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th><th>세액공제 한도
(퇴직연금 포함)</th><th>세액공제율</th></tr>
<tr><td>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td><td rowspan="2">600만원
(900만원)</td><td>16.5%</td></tr>
<tr><td>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td><td>13.2%</td></tr>
</table>
- 단, 위 납입요건의 ②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내에서 위 표의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됨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함
- 위 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금액부터 적용됨</td></tr>
<tr><td>연금수령시 과세</td><td>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되며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적용</td></tr>
</table>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단, '24.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 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 (연금외수령)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 한함)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종류 P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한 과세-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계좌 세액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다만,「소득세법」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 체계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수익자가 얻은 소득은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시점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수령시 퇴직/연금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수익자에 대한 과세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합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는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을 통하여 해외상장주식(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해외상장주식을 말하며, 이하 "해외상장주식"이라 함)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투자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해외상장주식을 말하며, 이하 "해외상장주식"이라 함)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은 해당 투자자의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이익이 없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인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환헷지 대상 해외자산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헤지 거래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 관련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요 내용
투자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도	1인당 3천만 원(투자자가 금융회사 등에서 가입한 모든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된 금액을 합산함)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을 투자자의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
세제혜택적용기간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로부터 10년까지

(8) 미국인 수익자에 대한 과세

미국 세법(US Internal Revenue Code, the "IRC")상 본 집합투자기구는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에 속합니다. 미국 세법상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에 관한 조항은 미국 투자자(수동적 투자회사에 직접 투자하거나 또는 그 회사의 보관회사나 판매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동적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미국 투자자들은 IRC § 1296에 따라 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시가 평가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거나 IRC §1294에 따라 본 집합투자기구를 Qualified Electing Fund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본 집합투자기구는 수동적 투자회사에 관한 정보를 미국인 수익자에게 제공하지 않을뿐더러 제공할 수 없습니다.

(9) 금융정보자동교환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 공통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 사안에 관한 금융정보자동교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동 기준에 따라 양자간 또는 다자간 AEOI 협정을 체결한 관할지들은 해당 관할지에 거주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AEOI/CRS에 따른 정보 보고 및 교환의 범위와 적용은 각 관할지 현지의 AEOI/CRS 시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호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 아일랜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및 영국을 포함한 77개 국가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홍콩은 적절한 국가들과 양자간 AEOI 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AEOI/CRS의 시행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투자자 자신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조세 전문가로부터 각자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계좌와 관련된 과세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정부 정책의 변경 및 개별 가입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고,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7 기(2023.10.19 ~ 2024.10.18)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8 기(2024.10.19 ~ 2025.10.18)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9 기(2025.10.19 ~ 2026.10.18)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요약재무상태표			
항 목	제 19 기	제 18 기	제 17 기
	2026.10.18	2025.10.18	2024.10.18
운용자산	281,330,338	357,178,595	482,138,843
유가증권	269,845,193	336,779,424	462,182,24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1,485,145	20,399,171	19,956,602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315,679	1,588,714	1,899,240
자산총계	282,646,017	358,767,309	484,038,083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372,739	1,639,448	1,942,088
부채총계	1,372,739	1,639,448	1,942,088
원본	228,391,151	301,826,911	412,401,710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52,882,127	55,300,950	69,694,285
자본총계	281,273,278	357,127,861	482,095,995

요약손익계산서			
항 목	제 19 기	제 18 기	제 17 기
	2026.10.18	2025.10.18	2024.10.18
운용수익	21,118,687	10,882,641	82,207,897
이자수익	299,109	467,741	500,878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손익	20,819,578	10,414,900	81,706,839
기타수익	0	0	180
운용비용	5,610,819	7,597,452	8,976,906
관련회사보수	5,610,819	7,597,452	8,976,906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	15,507,868	3,285,189	73,230,991
매매회전율	0	0	0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원, %)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0	0	0.0000	0	0	0.0000
주식 이외의 증권	129,620,856	0	0.0000	183,236,830	0	0.0000
장내파생	0	0	0.0000	0	0	0.0000
장외파생	0	0	0.0000	0	0	0.0000
부동산	0	0	0.0000	0	0	0.0000
기타(레포,대차,콜 등)	0	0	0.0000	0	0	0.0000
합 계	129,620,856	0	0.0000	183,236,830	0	0.0000

(주 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주 2)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 거래금액에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거래비용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거래비용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3)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주, 원,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9 기	제 18 기	제 17 기
	2026.10.18	2025.10.18	2024.10.18
운용자산	281,330,338	357,178,595	482,138,843
현금및예치금	11,485,145	20,399,171	19,956,602
현금및현금성자산	11,485,145	20,399,171	19,956,602
유가증권	269,845,193	336,779,424	462,182,241
수익증권	269,845,193	336,779,424	462,182,241
기타자산	1,315,679	1,588,714	1,899,240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301,350	1,567,893	1,870,676
미수이자	14,329	20,821	28,564
자 산 총 계	282,646,017	358,767,309	484,038,083
기타부채	1,372,739	1,639,448	1,942,088
해지미지급금	0	0	98,964
미지급운용수수료	631,908	763,930	846,622
미지급판매수수료	696,480	821,946	937,009
미지급수탁수수료	29,517	35,708	39,642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14,654	17,684	19,671
수수료미지급금	180	180	180
부 채 총 계	1,372,739	1,639,448	1,942,088
원 본	228,391,151	301,826,911	412,401,710
이익잉여금	52,882,127	55,300,950	69,694,285
자 본 총 계	281,273,278	357,127,861	482,095,995
부채 및 자본 총계	282,646,017	358,767,309	484,038,083
총좌수	177,679,351	240,064,185	335,840,833
기준가격	1,590.76	1,494.46	1,440.98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9 기 2025.10.19 ~ 2026.10.18	제 18 기 2024.10.19 ~ 2025.10.18	제 17 기 2023.10.19 ~ 2024.10.18
운용수익(운용손실)	21,118,687	10,882,641	82,207,897
투자수익	299,109	467,741	500,878
이자수익	299,109	467,741	500,878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4,948,033	19,774,469	121,466,948
지분증권매매차익	6,945,150	2,633,283	20,225,356
지분증권평가차익	18,002,883	17,141,186	101,241,592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4,128,455	9,359,569	39,760,109
지분증권매매차손	2,324,795	4,896,544	3,647,905
지분증권평가차손	1,803,660	4,463,025	36,112,204
기타운용수익	0	0	180
운용비용	5,610,819	7,597,452	8,976,906
운용수수료	2,598,777	3,553,234	4,070,664
판매수수료	2,830,532	3,795,555	4,620,849
수탁수수료	121,357	166,204	190,666
사무수탁수수료	60,153	82,459	94,727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15,507,868	3,285,189	73,230,991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80.56	11.08	191.34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백만좌, 백만원)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0/19~2024/10/18	345	321	4	4	103	101	246	271
2024/10/19~2025/10/18	246	271	4	4	47	50	203	228
2025/10/19~2026/10/18	203	228	2	2	54	63	151	17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0/19~2024/10/18	48	45	42	45	39	40	52	57
2024/10/19~2025/10/18	52	57	3	3	24	25	30	34
2025/10/19~2026/10/18	30	34	1	1	7	8	24	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0/19~2024/10/18	72	71	0	0	29	30	43	50
2024/10/19~2025/10/18	43	50	0	0	27	31	17	19
2025/10/19~2026/10/18	17	19	0	0	1	1	15	19

수수료선취-온라인(A-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0/19~2024/10/18	0	0	1	1	0	0	1	1
2024/10/19~2025/10/18	1	1	0	0	1	1	0	0
2025/10/19~2026/10/18	0	0	0	0	0	0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0/19~2024/10/18	22	26	0	0	4	5	18	25
2024/10/19~2025/10/18	18	25	6	8	0	0	24	34
2025/10/19~2026/10/18	24	34	0	0	0	0	24	3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0/19~2024/10/18	22	28	46	68	19	26	49	74
2024/10/19~2025/10/18	49	74	4	6	29	42	25	38
2025/10/19~2026/10/18	25	38	3	4	14	22	13	2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0/19~2024/10/18	2	3	0	0	0	0	3	4
2024/10/19~2025/10/18	3	4	0	0	0	0	3	4
2025/10/19~2026/10/18	3	4	0	0	3	5	0	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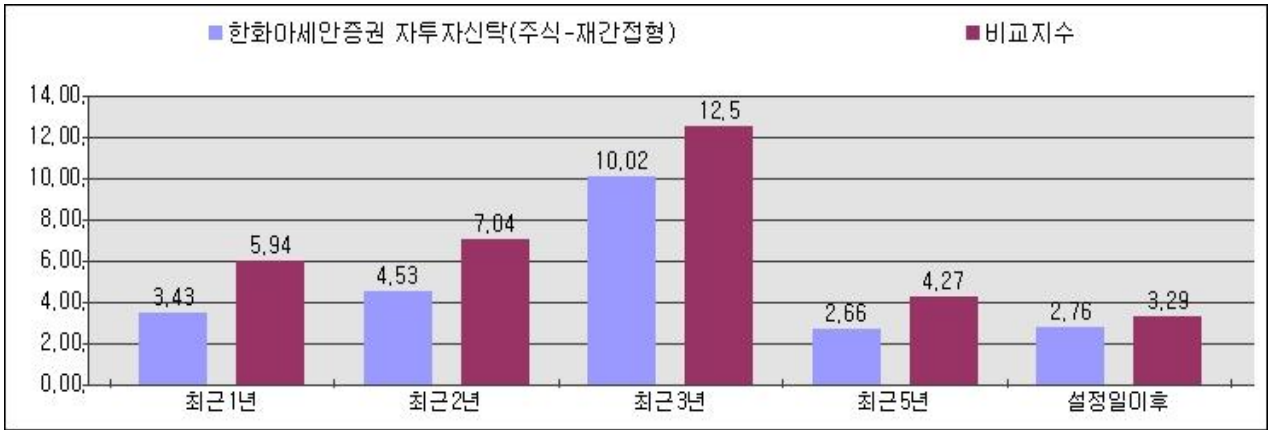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세전 기준 운용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용실적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기하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이 운용실적은 본 문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된 것으로 투자자의 실제 투자시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2025/10/26~ 2026/10/25	최근 2 년 2024/10/26~ 2026/10/25	최근 3 년 2023/10/26~ 2026/10/25	최근 5 년 2021/10/26~ 2026/10/25	설정일이후
한화아세안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07-10-19	3.43	4.53	10.02	2.66	2.76
비교지수		5.94	7.04	12.50	4.27	3.29
수익률 변동성(%)		10.47	11.67	11.32	12.14	17.84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48	2.55	7.95	0.72	0.81
비교지수		5.94	7.04	12.50	4.27	3.29
수익률 변동성(%)		10.50	11.69	11.34	12.16	17.8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07-11-01	1.48	2.55	7.95	0.72	0.72
비교지수		5.94	7.04	12.50	4.27	3.24
수익률 변동성(%)		10.50	11.69	11.34	12.16	17.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2011-10-20	1.38	2.45	7.84	0.62	3.30
비교지수		5.94	7.04	12.50	4.27	3.47
수익률 변동성(%)		10.50	11.69	11.35	12.17	13.92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4-12-02	6.06	5.23	10.80		2.12
비교지수		6.50	7.32	12.33		2.47
수익률 변동성(%)		6.56	10.17	10.32	10.76	10.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2015-10-29	1.68	2.76	8.17	0.92	3.39
비교지수		5.94	7.04	12.50	4.27	4.01
수익률 변동성(%)		10.49	11.69	11.34	12.16	14.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2015-11-17	2.09	3.17	8.60	1.33	4.24
비교지수		5.94	7.04	12.50	4.27	4.55
수익률 변동성(%)		10.49	11.68	11.34	12.16	14.2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2016-04-12	5.45	4.97	9.93	2.17	4.22
비교지수		5.02	6.58	12.18	4.09	3.83
수익률 변동성(%)		7.41	10.45	10.49	11.70	14.02

주1) 비교지수 : MSCI AC ASEAN TRN Index(USD) 90% + MMI Call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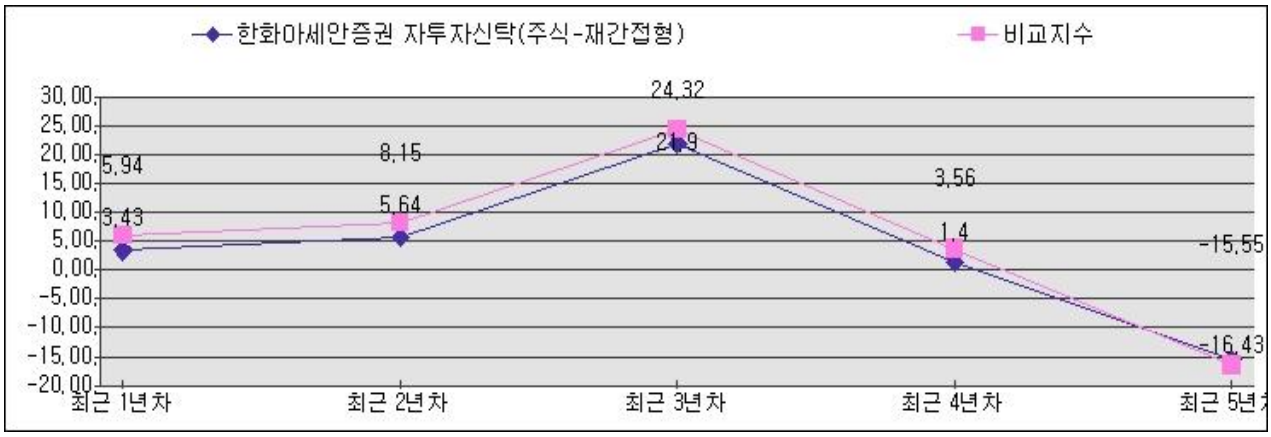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기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2025/10/26~ 2026/10/25	2024/10/26~ 2025/10/25	2023/10/26~ 2024/10/25	2022/10/26~ 2023/10/25	2021/10/26~ 2022/10/25
한화아세안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3.43	5.64	21.9	1.4	-15.55
비교지수	5.94	8.15	24.32	3.56	-16.43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48	3.63	19.64	-0.51	-17.21
비교지수	5.94	8.15	24.32	3.56	-16.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48	3.64	19.64	-0.5	-17.2
비교지수	5.94	8.15	24.32	3.56	-16.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1.38	3.53	19.52	-0.6	-17.29
비교지수	5.94	8.15	24.32	3.56	-16.43
수수료선취-온라인(A-E)	6.06	4.41	22.88	1.4	
비교지수	6.5	8.15	23.1	3.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1.68	3.84	19.88	-0.31	-17.03
비교지수	5.94	8.15	24.32	3.56	-16.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2.09	4.26	20.34	0.09	-16.69
비교지수	5.94	8.15	24.32	3.56	-16.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5.45	4.48	20.61	0.31	-16.49
비교지수	5.02	8.15	24.32	3.56	-16.43

주1) 비교지수 : MSCI AC ASEAN TRN Index(USD) 90% + MMI Call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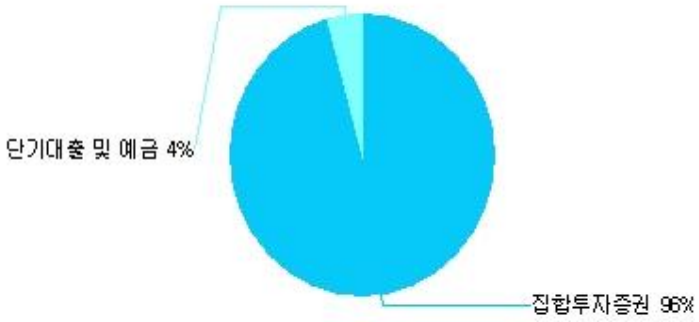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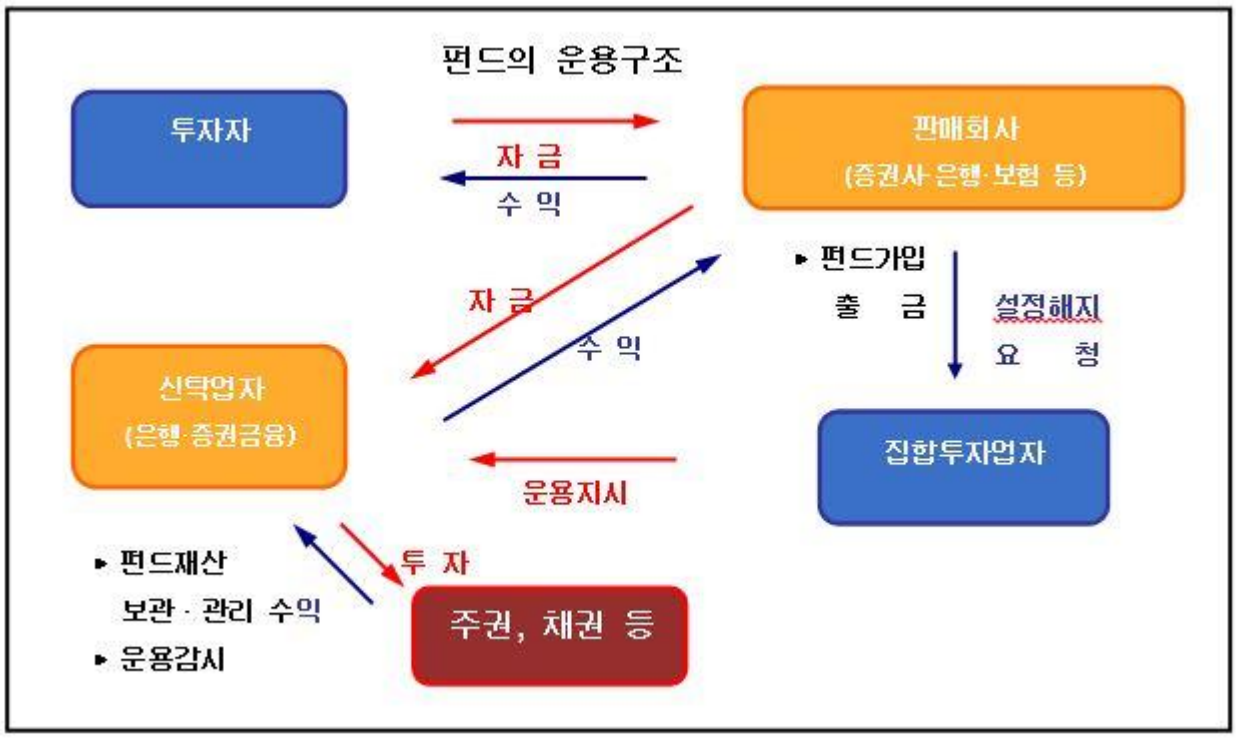
[2026.10.25 현재 / 단위: 백만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264	0	0	0	0	0	11	0	275
	(0)	(0)	(0)	(95.85)	(0)	(0)	(0)	(0)	(0)	(4.15)	(0)	(100)
자산합계	0	0	0	264	0	0	0	0	0	11	0	275
	(0)	(0)	(0)	(95.85)	(0)	(0)	(0)	(0)	(0)	(4.15)	(0)	(100)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단기대출 및 예금 4%
집합투자증권 96%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전화) 02-6950-0000	
홈페이지	www.hanwhafund.co.kr	
회사연혁	2011.09.19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출범 (한화투자신탁운용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합병) 2018.06.04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푸르덴셜자산운용	1982.06 국민투자신탁 설립 1998.02 국민투자신탁운용 설립 (국민투자신탁에서 운용조직 분리) 1999.02 현대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4.02 미국 Prudential Financial자회사로 편입, 푸르덴셜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10.06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
	한화투자신탁운용	1988.04 제일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6.08 한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자본금	1조 700억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목	제38기 (25.12.31)	제37기 (24.12.31)	항목	제38기 (25.1.1 ~25.12.31)	제37기 (24.1.1 ~24.12.31)
자 산			영업수익	161,551	151,890
현금및현금성자산	20,792	50,424	영업비용	116,771	105,418
예치금	45,080	2,517	영업이익	44,780	46,47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53,116	313,830	영업외수익	20,306	45,10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30,200	18,314	영업외비용	790	2,965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905,590	1,005,522	법인세차감전	64,296	88,616
대출채권	3,410	2,787	법인세비용	14,584	21,040
유형자산	17,079	15,906	**당기순이익**	**49,712**	**67,576**
무형자산	2,845	2,725			
이연법인세자산	25,841	3,959			
기타금융자산	70,052	64,408			
기타자산	2,175	1,710			
자 산 총 계	**1,476,180**	**1,482,102**			
부 채					
예수부채	44,648	2,320			
충당부채	2,228	1,721			
순확정급여부채	-1,430	-1,295			
당기법인세부채	5,336	8,663			
리스부채	13,473	11,649			
기타금융부채	20,276	21,741			
기타부채	1,274	1,017			
부 채 총 계	**85,805**	**45,816**			
자 본					
자본금	1,070,000	1,070,000			

기타불입자본	3,459	3,459			
기타자본구성요소	-87,551	-8,507			
이익잉여금	404,467	371,334			
자 본 총 계	**1,390,375**	**1,436,28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476,180**	**1,482,102**			

라. 운용자산 규모

(2026.10.25 현재,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96,865	66,400	10,986	0	61,820	19,970	0	39,113	118,584	14,078	134,044	561,86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02) 2073-7114
홈페이지 주소	www.kbstar.com

(2) 주요 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02) 6714-4600
홈페이지	www.hanais.com

* 2024.09.02일자로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신한펀드파트너스㈜에서 하나펀드서비스㈜로 변경.

(2)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구 분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 자산평가	FN 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02)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38 02)3215-1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홈페이지 주소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 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지역에서 개최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만약 1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냅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법 제19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아래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부분 참조)은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만 구성되는 수익자총회에 위 의결권 행사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 (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함)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현재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

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며,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반대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아니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염려되는 경우,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교부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투자신탁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신탁업자 등 금융투자업자는 관련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증권의 취득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 분석 · 확인 ·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등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제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제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되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 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투자자에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하“기준일”)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 · 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매매회전율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 제5항에 정해진 사항
-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에 정해진 사항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 (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함)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모투자신탁에 관련한 사항도 포함)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또한 판매회사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

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이 정하는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할 경우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table>
<tr><th>구 분</th><th>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th></tr>
<tr><td>가. 증권거래</td><td>
<table>
<tr><th>평가항목</th><th>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 (운용 기여도)</th><th>주문집행능력</th><th>비용 또는 수익</th><th>합계</th></tr>
<tr><td>항목 가중치</td><td>60%</td><td>20%</td><td>20%</td><td>100%</td></tr>
</table>
</td></tr>
<tr><td>나. 장내파생상품거래</td><td>* 각 평가항목은 5척도(A, B, C, D, E)로 평가
* 각 등급별 투자중개업자의 비율은 A(15%), B(20%), C(30%), D(20%), E(15%)를 원칙, 상하 5% 범위 이내 조정
* 각 평가자가 평가한 5척도의 환산점수는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 각 평가항목별 평가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 각 거래 자산별로 일정한 수의 범위 이내에서 거래 가능한 투자중개업자로 선정</td></tr>
</table>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선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